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75
----------	-----

2016년 2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2월 4일, 이신혜 의원(찬성자 47명)
2. 회부일자 : 2016년 2월 5일
3. 상정일자 :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2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신혜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되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울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은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각종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아동학대 관련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관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

- 본 제정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 서울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은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특례법”이라 함)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언론 보도(예. 2016년 1월 부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밝혀지듯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서울시 관내 연도별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06년 1,499건이었던 것이 '15년에는 2,322건으로, 지난 10년 전 보다 약 6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4년 9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서울시 아동학대 발행 현황>

(단위: 건)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신고접수	1,499	1,401	1,219	1,211	1,157	1,267	1,493	1,908	2,336	2,322
학대건수	783	755	722	779	731	833	721	814	951	1,167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한편,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54%¹⁾ 이상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고,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이는 아동학대특례법 시행으로 이후 학대신고의 증가와 같은 시민의 관심이 일정정도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사례(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동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이 상당함을 의미한다 할 것임.
-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아동의 정서 및 학습 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임.

1) 제시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 대비 학대판정 비율은 총 54.1%로 나타남.

- 그러므로,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가운데,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회복과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시민인식 향상에 기여하며, 아동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의 그 긍정성이 크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각 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됨이 없는바, 본 조례 제정의 특별한 문제가 없음.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관련)

- 안 제1항의 목적 규정에서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²⁾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 － 이는 당해 조례의 시행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로서의 그 근거 조문을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정의 규정(안 제2조 관련)

-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다음 각 호와

2)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 ④ 생략

같이 제시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안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함)에서의 정의 규정을 재인용 한 것이며,

－ 안 제4호(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경우 동 기관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해석상 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5조 관련)

○ 안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시행·수립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이를 매년 이행하고 있으나, 이 계획서에는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항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설명되고 있음.
- 다만, 서울시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하여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 2012년 9월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시장 방침)’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할 것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매년의 정례적인 계획서를 수립·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라. 아동학대위원회 설치 (안 제7조 관련)

- 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의·자문 기구로서,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이의 운영은 현행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현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³⁾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⁴⁾와

3)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지난 2013년 10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라 함)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 그 구체적 기능⁵⁾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자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2016년 2월 현재까지 상기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실정임.
- 이런 점에서, 본 조례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의·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을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그 기능의 합치성 측면에서 타당함이 있고, 또한 유사중복 위원회의 난립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측면이 있음.
- 다만, 2013년 10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에 따라 이미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기의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만 2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위법령 및 서울시 관련 조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본 조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운영도 그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해 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마. 실태조사 (안 제9조 관련)

- 안 제9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2년마다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⁶⁾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⁷⁾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본 조례안 제9조에서 제시한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와 별도로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시 관내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임.

-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 시한보다 그 간격을 짧게 규정

6) 「아동복지법」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 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아동 및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아동종합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득·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 구성 등 아동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아동의 언어·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관한 사항
3. 아동 양육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안전,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아동의 권리 및 인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빈곤아동 등 특정 영역 또는 계층에 대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하여 2년마다 중앙부처와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한 것은 아동학대 관련 실태파악을 통한 보다 시의적절한 예방사업 등의 대응체계를 갖추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짐.

- 다만, 행정여건상 일반적인 실태조사의 주기는 3~5년인 점, 아동학대 실태의 특성상 그 연한이 특별히 더 짧아야하는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 수준의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그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칫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과 형식적 수준의 실태조사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o 또한, 상기의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이하 “인권조례”라 함) 제66조⁸⁾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이하 “인권실태조사”라 함)’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실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제3항 관련).

- 이는 상기 인권조례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학대를 포괄하는 좀 더 상위적 차원의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실태조사에 학대관련 실태조사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8)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① 시장은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위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한 평가에 인권교육·연수의 실시여부, 인권보장수준 등 인권에 관한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서울시 조례 상호간 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단서조항을 통하여 상기 인권실태 조사해당 실태조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인권실태조사에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가 형식적 수준의 조사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짐.

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안 제10조 관련)

- 안 제10조는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에서부터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법적용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④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 제45조부터 제46조에 근거한 아동학대예방센

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명칭은 앞서 정의 규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12년 당시 기존 법상 명칭은 시민이 아동학대 관련기관으로 인지가 곤란해 함에 따라 그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변경 한 것임.
- 2016년 1월 현재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총 8개소로, 그 구체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현황>

(단위 : 명)

연번	기관명	운영체	관할구역	증사지수	설치 장소
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7	강남구 광평로
2	동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센벨유지재단	중구, 성동, 광진, 노원, 동대문, 종량	16	동대문구 답십리로
3	강서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서, 양천	12	강서구 양천로
4	은평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은평, 종로, 강북	11	은평구 은평로
5	영등포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구로, 금천, 영등포	12	영등포구 대림로
6	성북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성북, 도봉	11	성북구 동소문로
7	마포 아동학대 예방센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마포, 용산, 서대문	12	마포구 신수로
8	동남권 아동학대 예방센터	굿네이버스	강남, 송파, 동작, 강동, 서초, 관악	10	송파구 송이로

- 제4항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그동안 현장 실무자들의 요청 및 관련 학술연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주요기능인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는 각각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이질성 때문에 이들 기능을 각각 분리해야한다는 주장⁹⁾이 제기되어 왔는데,
- 이는 ‘현장조사’는 학대여부에 대한 판별을 위한 ‘조사’와 ‘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례관리’는 조사과정 이후에 피학대아동 및 가족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부모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임.
- 따라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동 규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짐.
- 한편,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인식이 향상되고 학대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학대신고의 후속조치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전적 활동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전문성 증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향후서울

9) 이봉주(2015); 김형모 외(2015),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시에서는 이 같은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신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75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4일

발 의 자 : 이신혜 의원(1명)

찬 성 자 : 이순자·우창윤·오승록·박미루·성백진·
김영한·김기만·김선갑·장인홍·김동욱·
문형주·조상호·김구현·김종욱·박양숙·
장홍순·유찬중·김태수·박호근·문상모·
한명희·김미경·이현찬·최관술·오봉수·
서영진·김창수·김생환·양준욱·김동승·
김동율·김용석(도봉)·김광수(도봉)·
박운기·김창원·김진철·박준희·서윤기·
유 용·조규영·장우윤·전철수·유동균·
문영민·강성언·김혜련·박진형 의원 (47명)

1. 제안이유

-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각종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 되는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서울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 받은 발달 환경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각종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사. 아동학대 관련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차.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④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3조(아동 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4조(사업비의 지원)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법률 등에 근거하여 기 시행 중인 사업은 추가 비용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비용추계 대상 제외 사유	비용추계 대상 제외 사업
타 법률 등에 따라 기 시행 중 사업	·제9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11조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제13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가. 총비용 ≍ 164백만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제7조)	5,800	5,800	5,800	5,800	5,800	29,000
	실태조사(제10조)	45,000	-	45,000	-	45,000	135,000
	소계(b)	50,800	5,800	50,800	5,800	50,800	164,000
총 비용(b-a)		50,800	5,800	50,800	5,800	50,800	164,000

나. 추계의 전제

- 1) 물가상승률 미반영
- 2) 추계기간 5차년도 이후에도 비용발생
- 3)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가 대신하는바, 조례제2조에 따라 위원회는 10명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4)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실태조사와 별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29,000\text{천원}$

○ 연간비용 = 위원회수당 + 운영경비

- 위원회 수당 = 1인(150천원) × 7명 × 4회 = 4,200천원

- 운영경비 = 1인(40천원) × 10명 × 4회 = 1,6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위원회 수당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운영 경비	1,600	1,600	1,600	1,600	1,600	8,000
계	5,800	5,800	5,800	5,800	5,800	29,000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수당은 공무원 3명(시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청공무원)을 제외한 7명, 운영경비는 10명을 기준으로 추계

2)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135,000\text{천원}$

= 연간비용 × 3회(추계기간 2년마다 한번)

○ 연간비용 : 45,000천원

항목	예산액(단위:원)		비 고
계	45,000,000		산출내역
기간제근로자	항목	금액	
세부내역	위촉연구원 법정부담금 초빙연구원	21,717,450	· 위촉연구원 : 13,377,000(1,911,000 × 1명 × 7월) · 법정부담금 : 1,337,700(13,377,000 × 10%) · 초빙연구원 : 7,002,750(2,334,250 × 1명 × 3월)
회의운영비	회의수당 진행경비	2,550,000	· 수당 : 2,250,000(150,000 × 5명 × 3회) · 회의진행경비 : 300,000(20,000 × 5명 × 3회)
조사 및 평가비	설문조사, 조사원, 정리원, FGI 진행경비 등	17,032,000	· 조사원 : 376,000(47,000 × 2명 × 4일) · 정리원 : 336,000(42,000 × 2명 × 4일) · 설문조사 : 15,000,000(30,000 × 500명) · FGI : 1,200,000(100,000 × 4기관 × 3회) · 진행경비 : 120,000(10,000 × 4명 × 3회)
일반운영비	자료구입비 자료인쇄비 일반관리비 등	3,700,550	· 자료구입비 : 300,000(20,000 × 15권) · 자료인쇄비 : 2,000,000(20,000 × 100부) · PC렌탈 : 746,900(106,700 × 7월) · 프린트렌탈 : 245,000(35,000 × 7월) · 자료발송비 : 90,000(10,000 × 9회) · 일반관리비 : 318,650(318,650 × 1식)

※ 자료 : 서울시 아동청소년상담관, 2014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산출내역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주 무 관 최 경 희

☎02-3705-1282, e-mail(hiru90@seoul.go.kr)

【참고】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규 정	관련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비 고
합 계		(×2,389,616) 6,215,299	(×1,963,525) 5,237,812	
아동학대 예방 교육(제9조)	아동보호전문 기관 운영 지원 및 아동복지센터 운영	65,330	65,330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예방사업비
아동학대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 (제11조)		(×2,028,816) 4,072,632	(×1,773,996) 3,547,992	8개소 (국비 50%, 시비 50%)
학대피대아동쉼터 설치· 운영 등 (제12조)		(×360,800) 902,000	(×151,764) 379,410	2개소 (국고 40%, 시비 60%)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제13조)		15,000	15,000	아동학대캠페인 등
사업비의 지원(제14조)		(×-) 1,160,337	(×37,765) 1,230,080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시설 1개소 지원 -아동학대그림홈 심리치료비 지원

※ 자료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정책담당관